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선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6203

발의연월일: 2024. 12. 4.

발 의 자:김선교·박덕흠·박준태

김위상 • 한지아 • 최수진

김예지 · 김성원 · 서천호

김정재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도매시장에 부류(部類)별로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하도록 하고, 도매시장법인 경영관리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여 운영 실적 부진으로 출하자 보호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도매시장법인의 신규지정 방식, 재지정 근거 규정 부재로 한 번 지정된 법인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퇴출 없이 경영을 지속하 고 있으며, 평가 결과가 부진한 도매시장법인의 취소도 개설자 재량사 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도매법인 간 경쟁이 제한적인 문제가 있으며, 또한 경매제 중심의 도매시장 거래 방식은 수급상황에 따른 가격 변 동성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출하자 보호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도매 시장법인을 지정 취소하도록 하는 한편, 도매시장법인 신규 지정에 공 모 방식을 도입하고, 재지정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도매시장법인간의 경쟁 확대를 도모하며, 동시에 경매제를 대신하여 정가수의매매 활성 화를 위해 법인별 전담 인력 확보를 의무화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 하여 농산물 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23조, 제32조, 제82조).

법률 제 호
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.

제23조의 제목 중 "지정"을 "지정 및 재지정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"지정하되"를 "공모하여 지정하되"로 하며,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⑥ 도매시장법인이 제1항에 따른 지정기간의 만료 후 계속하여 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지정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재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.
- ⑦ 도매시장 개설자는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제6항에 따른 재지정을 할 수 있다. 다만, 중앙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도매시장법인을 재지정하고자 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재지정여부를 협의하여야 한다.
- ⑧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1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지정 또는 재지정 할 때에는 필요한 지정조건을 붙일 수 있다.
- ⑨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및 재지정 절차와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3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매시장법인은 전 담인력을 채용하여야 한다. 법인별 채용규모, 전담인력의 자격 등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 전담인력 채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 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.

제82조제3항 중 "취소할 수 있으며"를 "취소하여야 하며"로, "취소할 수 있다"를 "취소하여야 한다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23조(도매시장법인의 지정 및 제23조(도매시장법인의 지정) ①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 개설 재지정) ① -----자가 부류별로 지정하되, 중앙 도매시장에 두는 도매시장법인 모하여 지정하되-----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 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 의하여 지정한다. 이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지 정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. ② ~ ⑤ (생 략) ② ~ ⑤ (현행과 같음) ⑥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절차와 ⑥ 도매시장법인이 제1항에 따 른 지정기간의 만료 후 계속하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여 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지 정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도매 시장 개설자에게 재지정 신청 을 하여야 한다. ⑦ 도매시장 개설자는 5년 이 <신 <u>설></u> 하의 범위에서 제6항에 따른 재지정을 할 수 있다. 다만, 중 앙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도매시 장법인을 재지정 하고자 할 경 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

<신 설>

<신 설>

제32조(매매방법) (생략)

<신 설>

- 제82조(허가 취소 등) ①·② (생략)
 - ③ 제77조에 따른 평가 결과 운영 실적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로 부진하여 출하자

- 해양수산부장관과 재지정 여부 를 협의하여야 한다.
- 8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1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지정 또는 재지정 할 때에는 필요한 지정 조건을 붙일 수 있다.
- ⑨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및 재지정 절차와 그 밖에 지정에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.
- 제32조(매매방법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
 - ②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매시장법인은 전담인력을 채용하여야 한다. 법인별 채용규모, 전담인력의 자격 등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 전담인력 채용에 관한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도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.
- 제82조(허가 취소 등) ①·② (현 행과 같음)

(3)	 	 	 	

보호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, 시·도지사는 도매시장 공판장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.

④ ~ ⑦ (생 략)

취소하여야
<u>하며</u>
취소하여야 한
다.
④ ~ ⑦ (현행과 같음)